

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 
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남완현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8. 28.

運 營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90호로 2023년 8월 11일 남완현 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결산검사위원 결원, 신분상실 및 해임 시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·신설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내용 정비로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위원 결원 시 선임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신설(안 제4조)
- 나. 결산검사위원 신분상실 및 해임 시 단서 조항 정비(안 제9조)
-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본문 정비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: 생략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결산검사위원 결원, 신분상실 및 해임 시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·신설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내용 정비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### ○ 검토 결과

- 안 제2조에서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지방의회의원 비율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는 결산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 의장이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하게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으며,
- 안 제9조에서는 검사위원의 해임 사유 중 기존 ‘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’에 덧붙여 ‘사직서 등을 제출하였을 때’ 해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하여 해임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,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하였으며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고 자료

## 1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**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